

대체부품 품질인증 신청서

접수번호 -

신청구분		신규, 갱신		사업자번호			
신청인	회사명			사업장등록일	①		
	대표자			기업신용도	②		
	전화번호			홈페이지			
	주소						
제조공장	주소						
	공장등록일	③		자본금	④		
	연간매출액	⑤	타 기관인증	⑥	연구개발비	⑦	
	종업원수	총 명	임 원	사무직	기술직	기타	
기타	연구개발조직⑧		소비자 민원조직⑨		인력운용⑩		
	기업부설연구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담부서 <input type="checkbox"/>		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		연구개발 인력()명		
	일반부서와 병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부서명:				
업체담당	성 명	직 위	Fax		TEL		
			E-mail		HP		
인증신청품목 ⑪	품 목	차량모델명	부품번호⑫		OEM번호⑬		
납품실적 ⑭	품 목	'11	'12	'13	'14	'15	비고⑮
	국내(역원)						
	해외(만불)						
기술기반 ⑯	특허	실용신안	제품/디자인인증		품질시스템	기타	
변경심사 ⑰	변경구분	내용변경 (대표자, 상호, 주소, 기타())					
	인증서번호			인증서	발행된 원본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⑱		
특기사항							
<p>「대체부품에 관한 표준업무규정」 제8조에 의하여 대체부품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신청인 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.2em;">(사)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 귀하</p>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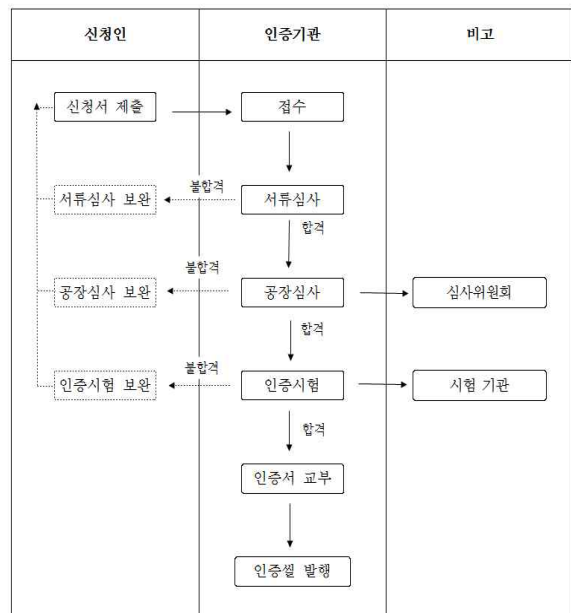
작성요령

- ① 사업장 등록일 : 사업장등록증 상의 등록일 기입
- ② 기업신용도 : 유효한 기간내의 기업신용평가 기준
- ③ 공장등록일 : 공장등록증 상의 등록일 기입
- ④ 자본금 : 재무제표상 자본금
- ⑤ 연간매출액 : 신청 전년도 연간 매출액(재무제표 상의 금액)
- ⑥ 타 기관인증 : 타 기관 인증여부 및 지정기관명(해당자료 제출)
- ⑦ 연구개발비 : 신청 전년도 투자 연구개발비(재무제표 상의 금액)
- ⑧ 연구개발조직 :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를 지칭
- ⑨ 소비자민원조직 : 조직이 갖추어진 경우
- ⑩ 인력운용 : 연구개발 조직이 있는 경우
- ⑪ 인증신청품목 : 인증신청품목이 다수일 경우, “첨부 참조”로 표시 후 양식 추가하여 작성가능
- ⑫ 부품번호 : 인증신청품목의 부품번호
- ⑬ OEM번호 : 인증신청품목의 OEM번호
- ⑭ 납품실적 : 인증신청품목이 다수일 경우, “첨부참조”로 표시 후 품목별 납품실적을 양식 추가하여 작성가능
- ⑮ 비고 : 국내 납품처 및 해외 납품국가
- ⑯ 기술기반 : 각 항목의 건수를 기입하고 첨부자료에 리스트 및 사본 첨부 필요
- ⑰ 변경심사 : 변경내용이 있을시만 기재
- ⑱ 발행된 원본제출 : 변경심사 시 기 발행된 인증서 원본 제출 확인

※서류심사 제출서류

1. 인증신청업체 설명서
2. 인증신청부품 관련 제원
3.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(해외업체의 경우 공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사본
4.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사본
5. 산업재산권·신지식재산권 목록 및 증빙자료(해당 시 제출)
6. 국내외 인증부품 품질인증기관 인증실적 및 증빙 자료(해당 시 제출)
7. KS, ISO 등 국가 및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
인증실적 및 증빙자료(해당 시 제출)
8.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·품질 인증서약서
9. 제조물배상보험가입 증빙 자료(해당 시 제출)

품질인증 절차



[별지 제5호의 서식]

대체부품 성능·품질인증 서약서

업 체 명

대 표 자

주 소

전화번호

본 업체는 대체부품 품질인증신청을 함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따르며,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대체부품 품질인증(이하 “인증”)기관의 인증부품 품질인증 업무절차를 준수한다.
2. 소비자의 불만사항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한다.
(인증부품의 A/S기간은 OEM의 A/S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.)
3. 인증심사에 따른 부품의 분해, 파손에 대하여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4. 인증기관의 직원이 심사를 위한 방문 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.
5. 인증기관의 신청 보완 요구 시 보완 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한다.
6. 인증서 발급 후 인증부품의 품질,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.
7. 인증이 허가된 인증범위의 측면에서만 인증에 대한 주장을 한다.
8. 인증기관이 제시한 인증표시 방법을 준수하며 인증취소 시 인증서를 반납한다.
9. 인증기관이 공장심사 시 국토교통부의 관련자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한다.
10. 인증부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재수리 작업이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며,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당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서약인은 이에 따른다.

년 월 일

서약인 :

(서명)

(사)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 귀하